

특정바우처(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남/여)
	③주 소			④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⑤신청구분	1. 신규신청 () 2. 기 지원 대상자(전입 등) () 3. 기 지원가구 수령인 변경 ()						
⑥세대구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⑦신청인 변경사항 (필요시 작성)	기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변경사유
⑧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시 작성)	본인(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주택 소유자)은 위의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 중임을 확인하며, 위의 신청인이 임대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의 계좌에 월별 입금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로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20 소유자: (인)</div>						
⑨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본인(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20 임차인: (서 명)</div>						
	⑩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기준 초과,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반환금 발생 포함)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20 신청인 (서 명)</div>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필요시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반지하, 지상층) 각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3. 임차인 예금통장 사본 1부 4. 실거주 입증서류(필요시) 5. 우선지원대상 입증서류(필요시) 6.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약정서(필요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납입증명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소득확인 서류 4. 주택 소유(미소유) 확인서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div>							